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9. 12.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8. 31.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4. 9. 6.
- 다. 상정일자 : 제2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94. 9. 12.)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최영명)

가. 제출이유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일정규모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를 생략,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 매입·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 이하의 토지와 시가1천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제3항).
-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함(안, 제21조제1항).
- 대부요율이 25/1000인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에 50/100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토록 완화함(안, 제22조제1항, 제2항).
-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규정함(안, 제27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진재)

-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의 납부등에 있어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등에 그 대상을 확대하고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이는 1993. 9. 23.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제85조 및 제92조제3항 등에 근거한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를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매입, 대부 등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조희태 위원) : 개정안 제21조1항에 보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 결정에 대한 인정은 누가 하는가?
- 답변(최영명 재무과장) :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됩니다.
- 질문(이봉형 위원) : 구유재산 불하시 5년 분납이 되는데 사유재산도 해당되는가?

- 답변(최영명 재무과장) :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과 국유재산도 해당됩니다.
- 질문(유남렬 위원) :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유재산 심의 제외대상은 얼마나 되는가?
- 답변(최영명 재무과장) : 전체 건수의 70% 정도 되고 금액 규모로는 64% 정도 됩니다.
- 질문(김성환 위원) :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로 하지 않고 일시불로 낼 경우 공제제도는 없는가?
- 답변(최영명 재무과장) : 없습니다.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9
----------	-----

제출일자 : 1994년 8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일정규모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를 생략,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등 공유재산 매입·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골자

-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와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제3항)
-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함.(안, 제21조제1항)
- 대부요율이 1000분의 25인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토록 완화함(안, 제22조제1항, 제2항).
-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19%에서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15% 연체요율을 규정함.(안, 제27조)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 제15조
- 지방재정법(1991. 12. 31. 법률 제4466호) 제82조, 제84조제4항

○ 지방재정법시행령(1993. 9. 23. 대통령령 제13981호) 제85조, 제92조제3항 및 제100조제1항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여부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30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재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2 조(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8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5.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 22 조 제1항 단서중 “새마을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 하고, 제2항중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소액의 것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 2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7 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금)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10 조(관리 및 처분) ①-②(생략) (신설)</p> <p>제 12 조(사용허가 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개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p> <p>②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p> <p>제 21 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생략)</p> <p>1. 마포구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p> <p>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p> <p>3. (생략) (신설) (신설)</p>	<p>제 10 조(관리 및 처분) 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300제곱미터이하토지(당해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2.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재산</p> <p>제 12 조(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p> <p>제 21 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현행과 같음)</p> <p>1.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p> <p>2. (현행 제3호와 같음)</p> <p>3. 천재·지변·기타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p> <p>4.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 22 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p> <p>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p> <p>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주한외국공관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p> <p>② 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연간 대부료는 지방세법 제19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소액의 것으로 한다.</p> <p>③-⑦ (생략)</p> <p>제 27 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사용료 또는 매각대금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에 관하여는 마포구 일반회계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p>	<p>5.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제 22 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p> <p>① <u>취락개선사업</u></p> <p>② <u>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u></p> <p>③-⑦ (현행과 같음)</p> <p>제 27 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로 한다.</p>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9. 13.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8. 30.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4. 9. 6.
- 다. 상정일자 : 제2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94. 9. 13)상정, 의결